산업통상부공고 2026-14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4호, 2025.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제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공고 하여야한다.

[별표] 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 사항

1. 외국인의 증권 · 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1) 외국인의 내국인과의 자본 거래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배제, 신고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자본거래) 참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재 정 경제부
	※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대상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 등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6조	산 업 통상부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 및 제7-37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본인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등을 개설하여 관련 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 제7-37조	재 정 경제부

(2)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 및 처분 절차 등	□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개설할 것 가. 상장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2.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	금 융 위원회

(2)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 및 처분 절차 등	ㅇ 다만, 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②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주주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④국내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⑤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등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금 융 위원회

(2)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 및 처분 절차 등	□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 ②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 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③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⑤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에 한함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금 융 위원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금융투자업규정」 제6-20조	
	□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ㅇ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	

(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절차 등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 또는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등으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재 정 경제부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국 토 교통부
	□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됨	「부동산거래신고 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절차 등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	국 토 교통부

2.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및 지점 설치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1) 외국회사의 영업 개시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함 ㅇ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함 ㅇ 상기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상법」 제614조	법무부
(2)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명령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상법」 제619조	법무부

(3)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설치 및 송금 규정	□ 외국회사가 국내지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단,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 □ 국내지사가 결산순이익금 또는 감액된 영업기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제9-36조	재 정 경제부

3. 업종별 외국인투자(외국회사의 국내지사 및 지점설치) 제한 규정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1)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 제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한국전력공사)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지 못함 ㅇ 종목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 * 한국전력공사의 정관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제1항 제2호 및 정관 제12조에서 1인 취득한도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적용 ㅇ 종목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 해당 종목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 □ 상기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상기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제1항 * 한국전력공사 정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3항	금 융 위원회

(2) 공기업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공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음(한국가스공사) ㅇ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 한국가스공사의 정관 제11조2항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함 ㅇ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를 적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 한국가스공사 정관	재 정 경제부 산 업 통상부
(3) 은행업의 주식소유 제한	□ 법령에 규정된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고 한도초과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 초과 보유 가능 (내·외국인공통) ㅇ 외국인의 한도초과보유 요건 - 금융업을 외국에서 영위하는 회사(지주회사 포함)일 것 - 자산총액·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BIS비율이 8% 이상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등	「은행법」 제15조제3항 「은행법」 제15조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6호	금 융 위원회

(4)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치	□ 외국은행(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은행법」 제58조제1항	금 융 위원회
	ㅇ 금융위원회는 상기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은행법」 제58조제2항	
	□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 내에 보유하여야 함	「은행법」 제62조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25조	
	ㅇ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함	「은행법」 제62조제2항	
	ㅇ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보다 적은 경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함(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은행법」 제62조제3항	

(5)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주식취득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사업*에 한함)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함)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함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외국인의제법인)은 외국인으로 봄 ㅇ 다만, 외국인의제법인이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2항, 제3항	

(5)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주식취득 제한	□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영 FTA)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유보목록 참조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2 이상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을 포함함)은 케이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100분의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4호 (2022.4.20.) :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부칙(1997. 8.) 제4조 (2002.12.26.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인의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전기사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발행 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비율 만큼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를 취소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됨 1.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의 허가 2.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전기사업법」 제96조	기후에너지 환경부
(8) 어업 면허 등 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정치망 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수산업법」 5조 「수산업법시행령」 3조	해 양 수산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어업,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의한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19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	

(9)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제한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여객 모집, 운임 · 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	「해운법」 제6조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 「해운법 시행규칙」제7조, 제18조	해 양 수산부
(10) 내항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제한	□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으로 함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 대한민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음 ㅇ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에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선박법」 제2조 「선박법」 제6조	해 양 수산부

(11) 신문 등 발행업 관련 제한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문화체육 관광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음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11) 신문 등 발행업 관련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문화체육 관광부
(12) 정기간행물 발행업 관련 제한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음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문화체육 관광부

(12) 정기간행물 발행업 관련 제한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문화체육관광부
	□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13) 뉴스제공업 관련 제한	□ 외국의 뉴스통신사는 대한민국 내 뉴스통신사와 계약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음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13) 뉴스제공업 관련 제한	□ 외국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1항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 뉴스통신사가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연합뉴스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14) 방송업의 진입 제한	□ 지상파 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①외국정부나 단체, ②외국인, ③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음)	「방송법」 제14조 제1항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ㅇ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음	「방송법」 제14조 제2항	
	ㅇ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음	「방송법」 제14조 제3항	
	ㅇ 다만,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 ③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방송법」 제14조 제3항 단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14) 방송업의 진입 제한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 제3항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①외국의 정부나 단체, ②외국인, ③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해당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한 법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 포함)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1항	
	□ ①외국의 정부나 단체, ②외국인, ③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출자자인 경우를 포함)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14) 방송업의 진입 제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ㅇ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3항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단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15) 항공업 관련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국 토 교통부
	□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음	「항공사업법」 제9조	
	□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없음	「항공사업법」 제10조	

(15) 항공업 관련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機種)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름) 5.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름)	「항공사업법」 제54조	국 토 교통부

4.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산 업 통상부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산 업 통상부

	2.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부록1] 법정 독점업종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법 정 독점업종	□ 경마(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함 ㅇ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권을 발매하거나 경마를 행할 수 없음	「한국마사회법」 제3조 및 제48조	농림축산식품부
	□ 소싸움경기(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
	□ 경륜(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이나 경정(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 ㅇ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경륜·경정법」 제4조 및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법 정 독점업종	□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고용보험법」 제3조	고 용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조	고 용 노동부
	□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와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우편법」 제2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수도법」 제12조	기후에너지 환경부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	기후에너지 환경부

[부록2] 외국인의 국내자격 취득 및 외국공급자의 활동에 대한 제한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1) 도선자 자격 취득에 대한 제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고 ②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여 수습생 실무를 거쳐야 하고, ③ 도선사시험에 합격하고 ④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도선사면허 부여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음	「도선법」 제5조 「도선법」 제6조	해 양 수산부
(2) 외국인의 공연 활동	□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ㅇ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공연법」 제6조 「공연법」 제7조	문화체육 관광부

(3) 외국인의 해양조사 활동	□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해양수산부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함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	